비조치의견서 (☑비조치 □조치 □기타)

요청대상 행위	□ 은행 내부 임직원에 대한 HR정보(인사·연수 정보)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위탁 처리하고자 할 때 동 정보가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14조의2 제3항의 "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"에 해당하여 사전보고 의무 및 국내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
판단	□ 내부 임직원에 대한 HR정보는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14조의2 제3항의 고유 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동 규정상의 사전보고 의무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을 국내에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. ○ 다만, 해외 소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개인(신용)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.
판단이유	□ 금융회사가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 실제 이용일 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며,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을 국내에 설치해야 합니다(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제14조의2 제3항 및 제8항)
	 이는 금융회사의 중요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전자금융거래와 무관한 내부 임직원에 대한 HR정보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	 다만, 해외 소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(신용)정보 국외 위탁에 해당하므로, 「개인정보보호법」,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「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」등 관련 법규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

- **** <u>비조치의견서의 효력</u>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항· 제2항 참조)**
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 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 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 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 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

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 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